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9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1. 04. 27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빛공해방지계획과 시장이 수립하는 빛공해방지계획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용 법 조문을 추가하여 규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시장이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관할지역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(안 제5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미디어파사드 장 식조명”이란 건축물 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,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, 색 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 는 <u>조명방식</u>을 말한 다.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발광기구 및 부 속장치를</u>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빛공해방지계획 의 수립) ① <u>시장은</u> <u>「인공조명에 의한</u> <u>빛공해 방지법」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</p>	<p>제5조(빛공해방지계획 의 수립) ① <u>시장은</u> <u>「인공조명에 의한</u> <u>빛공해 방지법」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</p>	<p>제5조(빛공해방지계획 의 수립) ① <u>시장은</u> <u>「인공조명에 의한</u> <u>빛공해 방지법」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</p>

5조제1항에 따라 관
할지역의 빛공해 방
지를 위한 계획을 5년
마다 수립하여 시행
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5조제1항에 따라 빛
공해방지계획이 수립
된 날부터 1년 이내에
관할 지역의 빛공해
방지를 위한 계획을
수립하여 시행하여야
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5조제1항에 따라 관
할지역의 빛공해 방
지를 위한 계획을 법
제4조제1항에 따른
빛공해방지계획이 수
립된 날부터 1년 이내
에 수립하여 시행하
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조명방식을”을 “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별표 제4호의 시설규모란 중 “공원등 등”을 “공원등 등(개량 제외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”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,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,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<u>조명방식</u>을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5조(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</u>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(별표)

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(제22조제2항 관련)

구분	시설 규모
1. 건축물	공공청사
	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
2. 공동주택	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3. 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 구조물 등
4. 공간조명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
5. 미디어 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

(별표)

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(제22조제2항 관련)

구분	시설 규모
1. 건축물	공공청사
	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
2. 공동주택	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3. 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 구조물 등
4. 공간조명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(개량 제외)
5. 미디어 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